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86 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김승남·소병철·최종윤

윤재갑 • 김회재 • 김남국

오영환 • 박완주 • 김원이

송갑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. 하지만 현행법은 수난구호 관련 수당・실비 지급 대상을 "민간해양구 조대원과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"으로 한정하고 있음.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.

또한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, 지자체별로 비용산정, 대상, 기준, 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 생하고 있음.

이에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,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,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, 민간해 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·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0조제2항, 제3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2항 중 "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"를 "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(이하 "민간해양구조대원등"이라 한다)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민간해양구조대원이"를 "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"로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 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 ① (생략)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 (2) ---------수남 <u>구호민</u>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 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 또는 단체(이하 "민간해양구조 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 대원등"이라 한다)가-----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 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 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에 참여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 요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④ ~ ⑥ (생 략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 ⑦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----무 및 구조 관련 교육·훈련으

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 상(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입거나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·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